

**「2021/22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EIPP)」**

**인도네시아 수도이전 법령, 연구자료 및**

**최종보고서 번역(인도네시아어↔한국어)**

# **과 업 지 시 서**

**2022. 06.**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1. 과업명 : ‘2021/22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EIPP)’ 인도네시아  
수도이전 법령, 연구자료\* 및 최종보고서\*\*  
번역(한국어, 인니어) 용역

\* 연구자료 : 인도네시아어→한국어, \*\* 최종보고서 : 한국어→인도네시아어

2.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2년 12월 16일까지

\* 과업기간 : 과업범위 ① ~ ⑧은 계약일로부터 50일 이내,  
⑨ ~ ⑬은 별도 발주일로부터 2022년 12월 16일까지(약 50일)

3. 과업목적

인도네시아 EIPP(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과제와 관련하여  
인도네시아 정부는 신수도법(22.2.15.) 및 신수도법 시행령(22.4.18.)을  
공포함

이 외에도 「신수도 슈퍼허브 지원을 위한 교통시스템 계획연구」  
자료와 '22.11월에 발간될 최종보고서 성과품을 국/인도네시아어로  
번역하여 양질의 과업 산출물을 도출하고자 함

4. 계약방법 : 제한(단가)경쟁입찰 / 적격심사

5. 사업예산 : 92,925,000원(VAT 포함) 이하

\* 기초금액 : 45,000원(VAT포함)

\* 산정근거 : 한글 및 인도네시아어 A4 1쪽, 250단어 기준으로 측정(예상단가)

※ 예상 번역 분량 : 약 2,065 페이지 이내

※ 단가 계약으로 과업분량에 따라 정산 함

- 1쪽 기준 100단어 미만의 경우 해당 쪽에 대해 계약단가의 50% 감액

※ 실제 발주량은 이보다 적을 수 있으며, 사업비 조기 소진시 사업  
조기 종결 될 수 있음

#### 4. 과업범위

구분	번역물명	총 페이지	총 단어
1	신수도 슈퍼허브 지원을 위한 교통시스템 계획연구	A4용지 기준 총 1,065페이지	266,250단어 (1,065페이지×250단어)
2	인도네시아 수도이전에 따른 신수도법		
3	신수도법 대통령령 제 63호 - 첨부파일 제 3장		
4	신수도법 대통령령 제 63호 - 첨부파일 제 4장		
5	신수도법 대통령령 제 63호 - 첨부파일 제 5장		
6	신수도법 대통령령 제 63호 - 첨부파일 제 6장		
7	신수도법 대통령령 제 64호		
8	신수도법 정부령 제 17호		
9	신수도 개발계획 2차	A4 용지기준 총 1,000페이지	250,000단어 (1,000페이지×250단어)
10	신수도 자금조달방안 2차		
11	신수도 녹색성장 및 숲도시 개발계획		
12	신수도 ITS 및 전기차 대중교통 도입		
13	신수도 에너지전환계획 2차		

#### 5. 과업내용

- (국문번역) 과업범위에 명시된 교통시스템 계획 연구 자료, 신수도법 및 시행령
- (인니어 번역) 국문 최종보고서 5건
- (품질관리) 고품질 성과물 확보 및 성과물의 실용성 제고 등을 고려한 번역 및 2차 번역검수 시행

## 7. 과업의 일반원칙

### 가. 적용기준 및 일반 조건

- 1) 과업수행의 모든 사항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해 수행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공사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공사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2) 과업 진행에 대하여 공사의 설명요구가 있을 때는 계약 상대방의 과업책임자가 참석하여 과업내용을 설명하고 공사의 수정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3) 과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사고의 책임 및 행정적 제비용 등 문제 처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 한다.
- 4)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을 경우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 과업수행의 성과물은 공사가 소유한다.

### 나. 조직 및 인력

- 1) 계약상대자는 과업착수와 함께 과업수행 조직 및 인력에 대하여 아래 사항을 포함한 “과업착수계” 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산출내역서
- 용역책임자(주요이력, 재직증명서, 자격증)
- 인력투입계획서(주요이력, 재직증명서, 자격증)
- 투입인력 보안각서
- 청렴서약서

- 2) 계약상대자는 공사에서 의뢰하는 번역건은 법령 및 전문 분야 보고서 등 심도있는 정보를 번역하는 업무로 과업 수행에 있어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포함된 전담팀을 구성하여야 한다.
- 3) 공사는 과업수행인력이 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과업수행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다. 과업 절차 및 방법

- 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공사에 서면으로 “과업 착수계” 를 제출하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2)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계약내용(과업수행계획서 등)을 변경하는 경우
  - 예산의 증가, 과업의 품질 및 공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 과업 하도급에 관한 사항
  - 기타 상호협의를 따라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
- 3) 과업계획서를 바탕으로 공사와 계약상대자 간 합의에 의하여 각 과업(보고서 번역)에 대한 과업수행 확정 시, 계약상대자는 해당 건의 과업에 착수한다.
- 4) 계약상대자는 각 번역된 보고서를 기재된 마감일까지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번역을 위해 활용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5) 계약상대자는 공사가 과업 내용의 보완이 필요하거나 추가 과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완 및 추가 요청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사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 라. 성과물 제출

- 1) 본 과업수행 중 제출하는 번역물에는 과업책임자가 인감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수행한 과업의 질과 정확도에 대한 적극적인 책임을 진다.
- 2) 번역물은 과업책임자와 사전협의하며, 보완을 요구할 시에는 즉시 보완하고 승인을 받은 후 계약종료일까지 과업성과품으로 제출한다.
- 3) 과업이 완료된 후라도 성과품에 대한 보완지시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성과품을 7일 이내에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4) 본 과업의 수행결과를 증빙할 제반 자료에 대한 모든 권리는 우리공사에 있으며, 우리공사와 사전협의 없이 타 용도 및 임의로 전용, 변경, 개조하여 사용할 수 없다.

#### 마. 과업의 변경

- 1) 계약 후 과업지시서 및 예산내역서의 내용은 계약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 중 여건변화, 과업내용의 추가 등으로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업범위 및 내용 등을 변경할 수 있다.

- 2) 본 과업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는 우리공사의 사전승인을 받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3)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과업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와 과업의 내용, 기간 등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상호협의를 의해 해제 또는 조정할 수 있다.
- 4)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절하거나 과업지시서를 변경할 수 있다.
- 5) 기타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전협의를 의하여 결정하며, 본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우리공사가 요구할 경우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고, 본 과업지시서의 해석에 의문이나 문제가 있어 계약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리공사의 해석에 따르기로 한다.

#### 바. 보안 책임

- 1) 과업지시서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운영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한다.
-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통하여 얻은 정보 및 공사의 기밀사항에 대하여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기간이 완료된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거나 일반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 3)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내용에 대하여 공사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공사에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에는 제반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 4) 과업수행 중 생산된 모든 자료 및 성과물은 공사의 사전 승인 없이 타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

#### 사. 특별조건

- 1) ‘계약상대자’가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을 경우,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2) 과업수행자는 착수계 제출 이후 과업종료 시까지 과업책임자의 승인없이 임의 교체할 수 없다. 단, 본인의 중병, 이민, 퇴직 등 부득이한 경우에 승인될 수 있으며, 기존 과업수행 참여자보다 업무수행 역량이 높은 자로 한정하며 우리공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3) 승인 없이 과업수행 참여자의 교체가 있는 경우 당해 과업 참여자 및 ‘계약상대자’에 대하여는 우리공사가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8. 보안대책

- 1) 과업책임자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보안각서를 제출받아 과업착수와 동시에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2) ‘계약상대자’는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자료 보관함은 별도 비치하되, 대외비와 일반 자료보관함으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과업종료 시 과업 폐기물은 소각 처리한다.



- 3) 계약상대자는 과업참여자 교체 시,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유출을 방지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4) 계약상대자는 과업참여자가 교체될 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보안규정 이행여부에 대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5) 번역물은 과업책임자와 사전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생산·관리하여야 한다.
- 6) 과업수행 중 생산된 모든 관계 서류, 자료들을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으며, 과업책임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하지 않는다.
- 7) 과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자료와 과업성과품은 과업 완료 시 전량 납품하며, 성과품을 추가로 인쇄하여 보관할 수 없다.
- 8) 과업수행 과정 중 각종 회의 시, 배포될 자료에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필요 최소부문만 생산하여야 한다.
- 9) ‘계약상대자’가 과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임의로 사용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기타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진다.
- 10) 과업내용 중 일부를 외국의 전문기술 및 지식을 활용하거나,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과업을 수행할 경우에도 동일한 보안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